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 등〉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42호)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36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개 요	1
1.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142호)	1
2.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336호)	2
II . 검토의견	4
1.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4
2. 조정절차 종료 예외사유 및 직권 조정 근거 신설 등	11

I. 개 요

1.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142호)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12.

(3) 회 부 일 : 2025. 11. 13.

2)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사업자들은 가맹계약으로 오인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것이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분쟁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의 오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3조).

2.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336호)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11. 18.

(3) 회 부 일 : 2025. 11. 19.

2) 제안이유

최근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의 악화로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교적 실패확률이 낮은 가맹계약 형태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창업희망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가맹사업”, “가맹본부” 등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 “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또한 가맹점 형태의 창업은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에 해당하지만,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등 법상 여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물품공급계약이나 용역도급 계약 등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가맹사업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

결한 사업자들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정절차에서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가맹본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함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조정을 거부함으로써 협의회의 조정절차는 종료됨.

이처럼 협의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자가 스스로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장·입증하기는 용이하지 않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의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신속한 사실과 증거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의 신속한 변론을 위하여 직권으로 협의체에서 실시한 조사 및 조정기록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23조의2제4항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개정안들은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가맹계약, 가맹사업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박상혁의원안 제3조의2 및 제43조 제6항제1호 신설, 이강일의원안 제5조의2 및 제43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박상혁의원안	이강일의원안
<신설>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계약이 아닌 계약에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가맹사업,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 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과태료) ① 가맹본부가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 ----- ----- -----

현행	박상혁의원안	이강일의원안
1억원이하,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생략) 1의2. (생략) 2. ~ 4. (생략)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 7.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1.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 8. (현행 제1	----- 제1호의2, 제1호의3 ----- ----- -----.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가맹사업 또는 가맹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현행	박상혁의원안	이강일의원안
⑦ · ⑧ (생략)	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①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사용,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 판매, ③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 ④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가맹사업과 관련한 운영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사업자를 가맹본부로,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안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가맹지역본부로 규정하고 있음¹⁾.

○ 이에 따라 가맹사업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규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이하 “가맹대행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정이 적용되지 않음.

□ 그런데, 가맹사업 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아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맹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²⁾

○ 이에 개정안은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가맹계약과 관련한 명칭의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맹사업이 아닌 사업을 가맹사업으로 오인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는 법률에서 특정한 자격을 부여한 자격자나 자격단체의 명칭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단체 등의 명칭과 관련하여 해당 자격자나 자격단체 또는 특수법인·단체가 아니면 그와 동일한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자격자 등의 권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자격자 사칭이나 유사 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³⁾

□ 다만, ‘가맹’이라는 용어가 가맹사업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널리

2) 「규제 회피」 유사 프랜차이즈에 피해 우려...“가맹 규정 신설해야” (쿠키뉴스, 2025. 9. 2.)

3)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742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가맹은 ‘동맹이나 연맹, 단체에 가입함’을 의미하는 용어⁴⁾로서, 현행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등의 가맹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 가맹계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가맹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명칭 사용이 제한되어 타 분야 수범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⁵⁾

- 또한,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가맹본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⁶⁾

4) 가맹(加盟) 동맹이나 연맹, 단체에 가입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5)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⁷⁾의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서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⁸⁾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박상혁의원안은 1천만원 이하, 이강일의원안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과태료 상한액에 대하여는 입법례,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⁹⁾¹⁰⁾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7) <https://franchise.ftc.go.kr>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본부는 모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므로,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가맹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는 등록하여야 함).

8) 서울시가 2019년에 2018년 신규 가맹계약을 맺은 1,114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모른다(방문 경험 없다)고 답변하였고,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77.8%) ▲인근현황(인접한 10개 가맹점 정보) 문서(70.6%) ▲계약서(92.3%) 등 다수의 문서를 받았지만 정작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39.8%가 모른다고 답변하였음.(「서울시, 예비창업자 피해 없도록... '프랜차이즈 본부 정보공개서' 상시모니터링」, 서울시 보도자료, 2020. 3. 31.)

9)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를 일차적으로 알 수 있고,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표시광고법으로 제재 가능하며, 가맹은 타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유사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 10) 「과태료 금액지침」(2019. 2.)상 과태료 상한은 원칙적으로 1천만원 이하에서 설정하되, 그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천만원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한다.

「과태료 금액지침」(2019. 2.)상 행위유형별 최빈금액 및 중위금액에 따르면, 유사명칭의 최빈값은 500만원, 중앙값은 300만원임.(「법령 입안 심사 기준」 p.602, 법제처, 2024. 12.)

2. 조정절차 종료 예외사유 및 직권 조정 근거 신설 등

- 개정안은 ①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사실과 증거에 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제4항 단서 및 제23조제8항 신설), ② 수소법원이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사 기록 등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

현행	이강일의원안
제23조(조정 등) ① ~ ③ (생략)	제23조(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④ ----- ----- -----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협의회가 분쟁의 일방 당사자의 피해가 크고 사실과 증거에 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u><신설></u>	⑧ 협의회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현행	이강일의원안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의 신속한 변론을 위하여 직권으로 협의회에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 기록 및 제23조제8항에 따른 조정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를 준용한다.</u>

□ 조정은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의 하나로서,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여 그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임.¹¹⁾

○ 현행법에 따르면, 분쟁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함.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¹²⁾, 소송 절차에 비하여 분쟁당사자들의 비용과 시간의

11)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670~671

12) 제22조(조정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

- 그런데,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므로¹³⁾, 상대방은 피해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 진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피해 구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개정안 제23조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대하여, 피해가 크고 사실과 증거에 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협의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 제23조의2제4항은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협의회에 조사 기록 등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협의회가 조사한 자료를 소송에 활용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입증 부담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3) 제23조(조정 등)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조정제도는 양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기하여 사법적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당사자 일방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협의회가 조사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사항에 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워 조사의 객관성,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 아울러, 조정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현행법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모두 동일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14) 현행법은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 규정임.

제23조(조정 등) ⑥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 제23조의2제4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협의회에 조사 기록 및 조정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정의 성립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술이나 의견이 후속 소송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절차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⁵⁾¹⁶⁾
- 가맹점사업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 되어¹⁷⁾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

15) 이러한 취지에서 「민사조정법」, 「저작권법」은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을 소송 등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사조정법」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저작권법」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16) 최계영, 인권과 정의(2022. 6.), 행정형 조정의 현황과 과제 p.111

민사조정법은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당사자나 관계인이 조정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자료가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으면, 솔직한 의사교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17) 유명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55호),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13호)

까지 조정절차가 지속되어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분쟁조정 장기화로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참여 유인이 감소하여 조정의 실효성 저해로도 연결될 우려가 있으며,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은 감정·자문제도 도입 등 조정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¹⁸⁾하는 방향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한편, 소송에서 점주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

18)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중